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-1100호

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공고

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8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.

2017년 5월 4일
서울특별시 장

조 합 현 황			취소이유	취소근거	취소일
인가번호	조합명 (이사장)	소재지(정관)			
2010-4	기독교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(최대훈)	양천구 목3동 713-26 성일교회 3층	1년 이상 사업 미운영	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 제82조제1항제4호	2017.04.25.
2011-15	대한사람의료 생활협동조합 (김진수)	강남구 테헤란로 216, 3층			
2010-2	동대문우리의료 생활협동조합 (정태봉)	동대문구 제기동 1016 삼화빌딩 2층			
2011-18	백십자의료 생활협동조합 (장성인)	은평구 응암로 217 응원빌딩 2층			
2012-18	서울미소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(이희영)	서초구 서초동 1595-2 센츄리2차빌딩 1206호			
2013-3	서울희망의료 생활협동조합 (김명수)	구로구 개봉1동 353-42			

문의 : 서울특별시 공정경제과

(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, 전화 2133-5364)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-1103호

‘서울, 건축에 이야기를 더하다’ 스토리텔링 공모

2017년 5월 4일
서울특별시 장